제1장 직업훈련의 개념과 역사

1. 서구의 도제제도(독일)

- ① **마이스터제도**: 14세기경부터 동업조합(Guild)이 결성되면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이스터(Meister) 제도가 도제훈련을 사회제도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작용.
 - 동업조합의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마이스터 자격을 소유한 사업주여야 함
- ② 주말학교, 주일학교 제도: 산업의 발전으로 마이스터의 사회적 수요증가.
 - 기존의 도제훈련만으로는 체계적인 이론 습득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.
 - 부족한 지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사회생활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교회가 만듬.
- ③ 이원화 교육(Dual System): 일주일에 1~2일은 <u>이론이나 기초실습</u>을 배우고 나머지 기간은 현장훈련으로 실기기술을 배움
 - <u>도제훈련과 주일학교의 연계과정</u>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사회제도에 정착되어 오 늘날의 독일의 특수 직업훈련제도인 이원화 교육의 원형을 이룸.
- 2. 일본의 기능공 양성: 16세기경에 시작된 도제제도를 통해 기능인력 양성
 - ① 전습생제도: 외국인 기사와 직공을 초빙하여 서양식 공업기술 전습
 - 1856년 나가사키 제철소, 1865년 요코즈까 제철소
 -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식 공업이 계속 도입되는 가운데에서도 유지됨
 - ② 직인도제제와 공장도제제 : 전습생 제도가 없던 업종
 - 직인도제제: 특정 직인에게 일을 배움.(중소 공장)
 - 공장도제제: 공장에서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직인들로부터 일을 배움.(대규모공장)
 - ③ **양성공제도**: 작업의 세분화, 단순화 → 필요인력 수요가 다양화.
- 3. 직업훈련의 필요성(세계 여러나라들이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)
 - ① 각종 산업인력의 수요증가로 다양한 인력양성과정이 필요하게 됨.
 - ② 기존의 제도로는 새로운 인력공급을 감당할 수 없었음.
 - ③ 산업기술의 혁신 등으로 <u>새롭게 증가하는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습득하기에는 지</u>식기반이 미약했음.

※ **직업훈련제도**: 기존의 직업교육제도와 도제제도의 장점,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가미하여 생긴 절충제도

4. 1990년대 이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배경

- ① 직업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과 지식을 배양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짐.
- ② 기술의 진화에 따라 직업훈련에서도 학교교육에서와 같이 일정 부분을 학문적 배경의 이론교육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함.
- ③ 양질의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<u>직업훈련 대상 자원의 수준이 다원화</u>되고 더 나아가 직업훈련과정에 학력과 학위제도가 도입이 되는 등의 변화.

5. 한국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

구분	직 업 교 육	직 업 훈 런
정의	농업, 공업, 상업, 수산업, 서비스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교육	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사 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직업능 력개발 훈련
관장	교육부	고용노동부
담당	실업계 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특성 화고 등 ※오답: 일반계고등학교(X)	공공·민간 직업전문학교, 기업내 훈련시설, 폴리텍대학 등
학력	인정	불인정(폴리텍대학 학위과정 외)
교원	실업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소지자 등

6.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가 직업교육제도와 분리되어 발전된 이유

- ① <u>직업훈련은</u> 교육제도와 달리 인력수요에 따라 교과내용이나 시설, 장소, 대상자의 수준과 교사의 자격에 구애되지 않고 <u>과정편성이 용이하고 수시 운영</u>(제도 운영 상의 융통성)
- ② <u>중소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업주, 사업주단체, 또는 연합회가 실시하는 공동 훈련시설을 이용한 단체훈련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을</u>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음
- ※ 기존의 실업교육체제와 견습공 제도와 차이가 있었음

7. 정부가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

① 기술계 인력수요가 급증

- ② 직업훈련실시 대상자인 무기능 인적자원이 많았음
- ③ 기존의 실업교육과 견습공제도가 기술계인력 공급기능이 미흡
- ④ 실수요자인 기업주 스스로가 기술계 부족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
- ⑤ 평생교육훈련체제가 필요(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급변).

제 2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역할과 책무

8. 숙련형성을 바라보는 두 시각

구 분	주요 시각		
신고전학파 인적자본이론	훈련에 있어서 개별기업과 근로자의 책임을 <u>강</u> 조하며, 숙련형성에 정부의 개입이 <mark>불필요</mark>		
제도주의 이론 숙련형성을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 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한 숙련투자가 이루어 짐			

9. 제도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시장실패 사유

- ① 기업은 훈련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.
- ② 개인(특히 취약계층)은 훈련에 있어 시간·금전상의 제약이 있다.
- ③ 기업과 개인 모두 훈련으로 인한 비용은 명확하나 기대수익은 불투명하다.
- ④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.
 - ※ 숙련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.

10.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

- ① **직업훈련법 제정(1967년)**: 법 제정과정에서 사업주들이 반대함에 따라 당초 도입하고자 했던 직업훈련의무제는 도입하지 않되, <u>사업주에게 보조금</u>을 주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장려함에 따라 훈련이 활성화됨.
- ② 직업훈련에 대한 특별조치법(1974): 직업훈련 의무제 도입
 - <u>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</u>토록 하여 일정비율 인력양성 의무를 부과.

(사업내 직업훈련의무화)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일정비율(100분의 15)이상의 <u>기능</u> 인력을 의무적으로 양성하게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.(훈련생 : 훈련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적으로 취업)

- ③ 직업훈련기본법 제정(1976): 벌금형 대신 분담금으로
- ④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 제정(1997),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사업(1995): 기업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쓰일 용도로 임금총액 대비 일정비율의 고용보험료(기금)를 부과.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재원은 민간훈련인 사업주 훈련, 실업자 훈련, 근로자

<u>수강 지원금 등에 주로 사용하되, 공공훈련(폴리텍대 등)도 지원</u>하고 있다.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이 제정(1997)되어 1999년 시행됨.

⑤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으로 개정(2004년): 일회성 훈련→<u>평생직업능력개발</u>로, 양성훈련→<u>향상훈련</u>으로, 대기업 훈련→중소기업 훈련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 변화(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).

11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주요 특징

-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법이다.
-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원 지원기준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다.
- ③ 기능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12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주요 내용

- ①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
- ②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
-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
-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
- 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

13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구분

- ① 공공직업 훈련시설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. (ex, 한국폴리텍 대학, 한국기술교육대학교)
- ② (민간)지정 직업훈련시설: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 →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.

14. HRD관련 법령의 주요내용

- ① 고용보험법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
- 훈련비용 연간 총액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%(대기업), 240%(중소기업) 한도.
- ② 평생교육법: 사내대학의 설치 근거에 의한 법률.
- ③ 직업교육훈련촉진법: 현장실습
-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: 산학협력단, 계약학과.
- ⑤ 고용정책기본법

15.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요
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 주기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② 고용부가 지원하는 지역일자리사업으로 ⑦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와 ④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다.
- 16. 취업성공패키지 추진근거(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):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① 취업취약계층의 능력·적성 등에 대한 진단.
 - ②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.
 - ③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.

17.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목적

- 저소득 취업취약계층,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'①진단·의욕증진·경로설정 → ②직업능력·직장적응·능력증진 → ③집중 취업알선'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함.
- <u>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(취업촉진 및 빈곤탈출 촉진)하는 종합적인 취업</u> 지원체계.

18.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자

- ① 취업성공패키지 I 형(만18~69세,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~24세): 생계급여수급 자,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, 여성가장, 위기청소년, 니트족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등
- ② 취업성공패키지 II 형(만18~69세 이하):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 취업(청, 장년층),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 후 미취업청년,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, <u>영세자영업자</u>(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)
 -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~69세 이하
- ※ | 형과 || 형의 차이점: 취업성공수당은 | 형만 지급(3개월 근속:30만원, 6개월 근속:40만원, 12 개월:80만원) 청년구직활동수당은 | 형과 || 형 모두 준다.

19.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취업지원(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실시)

- ▶ 1단계(진단·의욕증진·경로설정):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, 적성 등을 진단하는 한편,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최종 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다.
- ▶ 2단계(직업능력·직장적응 능력증진): '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'에 따라 참여자의 실질적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'직업훈련, 인턴,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'.
- ▶ 3단계(집중 취업알선): '<u>동행면접'실시</u> 등 지원 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.

제 3장 직업훈련지원제도

20.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 3가지

- ①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<u>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</u> 우 훈련기관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.
- ② <u>사업주가</u>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실시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.
- ③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.

21. 실업자 지원훈련

- 실업자(구직자)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,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.
-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 지원훈련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으로 운영
 - ※ 계좌제 훈련 : 구직자(신규 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 - ①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.
 - ②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(내일배움카드)
 - ③ 취업사관학교(내일이룸학교):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훈련과정-여성가족부로 이관

22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대상

- ①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.(근로기준법에서 자기의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)의 실업자
- ② <u>초단시간근로자(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</u>취득자)
- ③ 연매출액 1억 5,0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
- ④ 비진학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.
- ⑤ 대학졸업예정자 등

23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내용

- ① 훈련기관 : 훈련비 전액
- ② 훈련생 : 훈련장려금 최대 31만 6천원(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6개월 동안 월 동안 10만원 추가 지원)

24.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(내일배움카드)

- ① 사업목적 : 취, 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(재)취직, 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.
- ② 지원대상 :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 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·선정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
- ③ 지원한도 : 1인당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~95% 지원(자비 5%~80%)

25. 취업사관학교(내일이름학교)

-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, 훈련과정 종 료후에는 취업까지 지원하는 기관
 - ① 훈련대상: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.
 - ② 훈련기간: 장기과정 [6개월(800시간)이상], 단기과정. [3~6개월(250~700시간)]
 - ③ 신청 및 접수
 - (운영기관) 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·지사, 우편 및 방문 접수.
 - (교육생) 해당 운영기관 우편 및 방문접수

26.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

- <u>사업주가</u> 소속 근로자 등(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)에 대하여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<u>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</u>하는 제도.

지원 내용	지 원 요 건	지 원 수 준
훈련비	2일 16시간(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) 이상의 훈련 실시	(우선지원 대상기업) 100% (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, 우선지원 대 상기업 제외) 60% (1,000인 이상) 40%
유급휴	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(대기업 60일)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 시간(대기업 180시간)이상 훈련실시	(훈련생 인건비) 소정 훈련시간*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%(대기업 100%)
가훈련 인건비	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	소정근로시간*시간급 최저임금액
훈련 수당	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 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	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 생에게 지급한 금액
숙식비	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	식비 1일 3,300원 한도, 숙식비 1일 14,000원 한도(1개월 330천 원 한도)

- ※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(위탁: 심평원)
- ※ 훈련비용 지원 : 한국산업인력공단 → 사업주/위탁 훈련기관

27.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

-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
 - 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
 - ② 일학습병행제사업
 - ③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(사업주위탁(중소기업특화)사업)

28.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유형

- ①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(포스코 등)
- ②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(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등 76개소)
- ③ 지역 공동훈련센터(한국해양대학교 등)

〈 파트너 훈련센터 〉

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 중 공동훈련센터가 시설, 장비 및 강사진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못하는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공동훈련센터를 대신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.

29.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(일학습병행제)

- ① 단독기업형: 단일기업이 Off-JT, OJT를 실시
- ② 공동훈련센터형 : 외부교육훈련기관 등 협약을 체결하여 OJT는 기업이, Off-JT는 외부기관에서 실시

30.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[사업주 위탁(중소기업특화)사업]

- ① 참여대상자 :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
- ② 지원내용 : 훈련비용은 <u>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훈련기관으로 직접 지급</u>되며 훈련생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훈련 참여
- ③ 핵심 직무과정 분야 : ⑦ 생산관리·품질관리, ④ 기술경영분야만 개설 가능

31. 재직자 지원훈련(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)의 지원대상

-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<u>기간제·단시간·파견·일용근로자</u>(일용근로자의 경우 60일 이 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)
-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(피보험자)
- ③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(임의가입)
- ④ 대규모기업 45세 이상 피보험자
- 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최근 3년 동안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 인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
- ⑥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중인 자
- ⑦ 이직예정자(180일 이내)
- ⑧ 관련법에 의해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

- ⑨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
- **※** 지원내용: 1인당 1년간 200만원(5년간 300만 원) 한도 지원

32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- ① 지원대상: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(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) 중 <u>3주 이상</u>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<u>비정규직</u> 근로자(<u>배우자 합산</u> 연간 소득금액 8,000만원 미만) 또는 전직실업자(배우자 소득포함연간 소득금액 8,000만 원 이하) ⇒ ※오답: 소득에 관계없이(X)
- ② 지원내용 : 월 단위 200만원(1인당 1,000만원 한도) 한도, 연리 1%(신용보증료별도),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
- ③ 대부여부 확정 : 근로복지공단
- ④ 금융기관 대출: 금융기관, 신청자

33. 능력개발시설·장비비용 대부

- ① 지원대상: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<u>훈련시설 및 장비를 확충</u> 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(기업), 사업주단체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⇒ ※오답: 근로자(X)
- ② 대부금리

대 상	대부금리	
중소기업 사업주 단체	1%	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 대기업 사업주 사업주 단체		
우수훈련기관		
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·공동훈련센터	1	
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	1.5%	
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	2%	
대기업 사업주·사업주단체(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)		
그 밖의 사업주·사업주단체(비영리 및 교육서비스·직업훈련 사업주 등)		
근로자단체		

③ 사업추진 체계 : 적격자 선정 및 대부대상 결정 - 한국산업인력공단

34. 국가직무능력표준(NCS: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

- ① 정의 :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·기술 등을 <u>산업부</u> 문별·수준별로 체계화한 것
- ② 활용
-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
-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,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
- 직업교육·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(일)에 맞게 개편
- 기업의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
- ③ 직무수행에 필요한 3요소 : 지식, 기술, 태도

35.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

- 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(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)
- → <u>출석률 75% 이상</u>이면서 내부평가(훈련기관) 및 외부평가(한국산업인력공단) 결과 <mark>평균점수가</mark> 80점 이상</u>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

제 4장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달기관 및 인력, 품질관리

36.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및 시설

- ① 공공직업훈련시설(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)
- <u>국가, 지자체 및 공공단체</u>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
- 공공단체 : ①한국산업인력공단(공단이 설립한 학교법인 포함), ②한국장애인고용공단, ③근로 복지공단 ※오답: 상공회의소(X)
- ② 지정직업훈련시설(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)
 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·설치된 <u>직업전문학교</u>, <u>실용전문학교</u>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(예-00직업전문학교, 00실용전문학교)
-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⇒ ※오답: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(X)
 -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 등 (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)

- ④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(예: 00평생교육원, 00 미용고등학교, 00 중앙실업학교)
- ⑤ 평생직업교육학원(예: 00 세무학원, 00 전기학원)
- ⑥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(예: 건설기술교육원, 한국발명진흥회)
- ⑦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시설(예: LG 인화원, 한국금융연수원)

37.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평가

- ① 사업목적: 직업능력개발<u>훈련기관의 건전성, 역량 및 훈련성과를 인증 평가</u>하여 부실훈련기관 진입을 배제하고 <u>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향상을 도모</u>하며,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직업능력개발 <u>훈련기관 및</u>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- ② 인증평가 요소 : 기관건전성과 훈련역량평가로 구분
 -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훈련 역량평가 실시 * 신규기관은 성과평가 부분을 생략
 - 기관건전성 : 준법성(행정처분), 재정건전성
 - 훈련역량평가
 - ⑦ 성과평가 : 훈련성과인 취업률 또는 수료율, 개설률, 수요자 만족도 등
 - (h) 현장평가: 훈련시설 장비, 훈련교강사, 훈련과정관리 등

③ 평가결과의 활용

- <u>인증평가 등급 및 항목별 세부점수 HRD-Net 공개</u>(훈련수요자에게 훈련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)
- 최상위등급 훈련기관 중 우수훈련기관 선정
- 최하위등급 훈련기관(인증유예등급)은 훈련과정 심사 신청 배제

38. 통합심사 대상훈련(직업능력심사평가원)

훈련사업	훈련대상	신청대상
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	실업자	■통합심사 대상은 훈련사업의 집체훈련 과정 ■ <u>사업주 훈련과정은 위탁훈련에</u> <u>한하며</u> , 기업 자체훈련 및 채용 연계형 훈련 등은 제외
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	[건답시	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(위탁)		
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	재직자	
(사업주위탁(중소기업특화)사업)		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		

39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제도의 변천

- 1967년 : 「직업훈련법」이 제정되면서 직업훈련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소정의 <mark>면허과정(양성과정 포함</mark>)을 이수하여 훈련기법 등의 훈련을 받은 다음, 교사자격을 취득
- 1991년 : 집체훈련교사와 현장훈련교사(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실무경력자)로 나누어 자격기준이 생김
- 1994년 이후 : 전문강사제도 도입
- 1999년 : 면허제도(면허과정)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제도(한국기술교육대 능력 개발원 교직과정)로 전환되면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됨.

40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) 시행령 제27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)

- ①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② 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 및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-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⑤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<u>용</u>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(직업훈련교사)

41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 과정

- 1999.1.1. 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」시행 ⇒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 :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와 기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- 정규교사양성과정 : 한국기술교육대학교
- 단기교사양성과정 :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

42. 훈련기관 등록관리시스템 운영

-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
- 훈련 교강사별 실적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는 등 관리 강화